

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추가공고

의약품의 적정 사용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,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.

2013년 12월 12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연번	성분명	연령기준	제형
1	atropine sulfate	12세 미만 (단 1% 제제에 한함)	점안제